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5호 2023. 10. 27.(금요일)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3-181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 . . . . 3
- 하동군 고시 제2023-182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 . . . . 4
- 하동군 고시 제2023-18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 . . . 5
- 하동군 고시 제2023-185호 고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 . . . . 7
- 하동군 고시 제2023-186호 하동군 택시운임·요금 변경 고시(정정) . . . . . 9
- 하동군 고시 제2023-187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 . . . . 10
- 하동군 고시 제2023-190호 하동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업계획 변경(단순기간연장) 고시 11
- 하동군 고시 제2023-191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 . . . . 14
- 하동군 고시 제2023-192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 . . . . 15

##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329호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
- 하동군 공고 제2023-1349호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21
- 하동군 공고 제2023-1352호 하동군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45

##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331호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 . . . . . 48
- 하동군 공고 제2023-1332호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 . . 50

회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2023-181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0. 11.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43
2. 허가연월일 : 2023. 10. 11.
3. 점·사용의 목적 : 가설건축물(축사) 유지를 위한 점용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1476-10, 182㎡  
(인근지번 : 북천면 직전리 111)
5. 점·사용의 기간 : 2023.10.11. ~ 2028.10.10.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최정\*

하동군 고시 제2023-182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0. 11.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44
2. 허가연월일 : 2023. 10. 11.
3. 점·사용의 목적 : 가설건축물(축사) 유지를 위한 점용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1476-10, 142㎡  
(인근지번 : 북천면 직전리 111-1)
5. 점·사용의 기간 : 2023.10.11. ~ 2028.10.10.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최정\*

하동군 고시 제2023-183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16.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길 24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10.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35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길 24	20231016	회신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6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824	20231016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산 2-10, 548-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1길 31-106	20231016	양구라는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344-2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479	20231016	옛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하동군 고시 제2023 - 185호

## 고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고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고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 사업목적 :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통해 고전면의 잠재력과 지역 고유테마를 살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위치 :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일원
4.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지방비 1,200)
5.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6개년)

6. 주요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기초생활 기반확충	동행센터 리모델링	
	행정문화복합센터 조성	
지역 경관개선 및 지역 역량강화	건강산책로 조성	
	어울림마당 조성	
	지역활력프로그램 등	
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등	

7. 사업 시행자 : 하동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8. 사업효과 : 고전면 소재지의 기초생활거점 기반정비 및 기능강화

9. 기타 문의사항

-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도시과 지역개발부서 (☎055-880-6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고시 제2023 - 186호

# 하동군 택시 운임·요금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따라 하동군 택시운임·요금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 하 동 군 수

1. 시 행 일 : 2023년 11월 1일(수) 04:00부터

※ 요금미터 수리검정 완료시까지는 택시요금 조건표에 의해 변경된 요금 적용 시행

2. 시행지역 : 하동군 전지역

3. 택시운임·요금 변경내역 [중형택시 기준]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기본단위	금 액	기본단위	금 액	
기 본 운 임	2km	4,000원	2km	5,000원	1,000원 인상
거 리 운 임	133m당	150원	130m당	150원	3m 단축
시 간 운 임 (15km/h이하)	34초당	150원	31초당	150원	3초 단축
심 야 운 행	20% 할증 (00:00~04:00)		20% 할증 (22:00~04:00)		2시간 확대
호출료	-		-		
시계외운행	할증 30%		할증 30%		

※ 거리운임, 시간운임 : 복합할증 50% 적용된 금액임

4. 할증 적용기준

- 거리요금 : 기본거리 2km(기본요금) 초과 후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 적용
- 시간요금 : 15km/h 이하로 주행 시 소요시간에 따라 요금 적용
- 심야할증 : 22:00~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할증 적용
- 시계의 할증 : 하동군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30% 할증 적용

하동군 고시 제2023-187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0. 23.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45
2. 허가연월일 : 2023. 10. 23.
3. 점·사용의 목적 : 배수시설물 설치
4. 점·사용의 장소 : 하동읍 신기리 일원(인근 : 하동읍 신기리 109-122)
5. 점·사용의 면적 : 374㎡
6. 점·사용의 기간 : 2023.10.23. ~ 영구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한국농어촌공사(하동남해지사장)

하동군 고시 제2023-190호

# 하동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변경(기간 연장)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라 하동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3. 10. 25.

##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중삼마을 건강네트워크, 모두가 즐거운 행복센터

2. 사업의 목적

- 진교시가지와 주변 농촌마을 내 공공공간을 이어내는 중심으로 단절된 도·농간 교류와 소통의 공간 조성
- 초고령화된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촉진하는 맞춤형 복지 인프라 확충
- 마을의 공공공간과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로 건강한 생활안정 및 공동체 문화 구축

3. 사업비 소요액 : 6,652백만원(국비 3,931 도비 786, 군비 1,835백만원)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 H/W사업 : 모두가 즐거운 행복센터 조성(지상3층, 연면적 1,744㎡)  
야외 정원 조성(총면적 786㎡)

- S/W사업 :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및 공유플랫폼 구축, 운영 프로그램 및 교육 등

나. 사업의 구역 :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147번지 일원

다. 기본계획 세부내역 : 붙임조서 참조

**5. 사업예정기간(변경)**

(당초) 2021년 ~ 2023년(3년간) ⇒ **(변경) 2021년 ~ 2024년(4년간)**

**6. 사업의 효과**

- 지역 주민들, 소외 노인층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노년에서의 삶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기여
- 초 고령화로 인한 생활 활력 쇠퇴 방지 대책으로 지역이 생활활력을 유지하는데 기여
- 안정적인 노인 건강 복지시스템으로 은퇴한 귀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사업,운영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 계획

**7.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토지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1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147	답	526	526	군유지	
2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146-1	대	314	314	군유지	
3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159-1	묘	13,389	470	군유지	
4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779-38	임야	1,204	576	군유지	
5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829-5	전	334	334	군유지	

## 9. 기 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6항에 따른 도시재생인정사업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 관련도서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이상
- 열람장소 : 하동군청 도시과
-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도시과 도시재생 (☎055-880-2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계획은 도시과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10. 종합계획도

주민 생활복지 기반조성을 통한 정주기반 회복



중심마을 건강네트워크  
모두가 즐거운 행복센터

**■ 사업개요**

- 사업위치: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147번지 일원
- 사업규모: 1,622㎡
-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사업비용: 66.52억원(국비 39.31억원 지방비 26.21억원 부처협업사업비 1억원)
- 사업기간: 2021 ~ 2023(3년)

**■ 사업위치도**



**■ 사업내용**

<b>지하1층</b>	<p>건물운영 지원시설 (796.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비행기, 기차) 및 / 환승센터 필요</li> <li>- *당첨업체: 하동시 도시건축과</li> <li>- *사업주체: 중앙대 중앙캠퍼스</li> </ul>	
<b>야외</b>	<p>즐거움 오감(五感)차유원터 "힐링가든(Therapy Garden)" (78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업체(최종): 하남정원(주)</li> <li>- *당첨업체(이전): 하동정원(주)</li> <li>- *당첨업체(이전): 정지정원(주)</li> <li>- *소유자명: 중앙대</li> </ul>	
<b>지상1층</b>	<p>공유분리관동체 "함메나눔실" (315.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업체: 중앙대</li> <li>- *당첨업체: 나눔(주)</li> <li>- *사업주체: 하동시 도시건축과</li> <li>- *사업주체: 중앙대 중앙대 / 중앙대 중앙대 / 중앙대 중앙대</li> <li>- *사업주체: 중앙대 중앙대 / 중앙대 중앙대</li> </ul>	
<b>지상2층</b>	<p>세대가 하나 되는 커뮤니티 케어 "스마트 건강 관리실" (315.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업체: 중앙대</li> <li>- *당첨업체: 중앙대</li> <li>- *당첨업체: 중앙대</li> <li>- *당첨업체: 중앙대</li> <li>- *당첨업체: 중앙대</li> <li>- *당첨업체: 중앙대</li> <li>- *당첨업체: 중앙대</li> <li>- *당첨업체: 중앙대</li> </ul>	
<b>지상3층</b>	<p>도농 교류·소통공간 "복합문화카페" (315.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업체: 중앙대</li> <li>- *당첨업체: 중앙대</li> <li>- *당첨업체: 중앙대</li> <li>- *당첨업체: 중앙대</li> <li>- *당첨업체: 중앙대</li> <li>- *당첨업체: 중앙대</li> <li>- *당첨업체: 중앙대</li> <li>- *당첨업체: 중앙대</li> </ul>	
<b>옥상</b>	<p>건물 옥상 태양광에너지 시설 (136㎡)</p>	



하동군 고시 제2023-191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0. 25.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46
2. 허가연월일 : 2023. 10. 25.
3. 점·사용의 목적 : 통신 전주 설치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청암면 상이리 1905, 0.1㎡  
(인근 : 상이리 1131-4)
5. 점·사용의 기간 : 2023.10.25. ~ 2028.10.24.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엘지유플러스

하동군 고시 제2023-192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0. 26.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48
2. 허가연월일 : 2023. 10. 26.
3. 점·사용의 목적 : 통신 전주 설치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3-1, 0.1㎡  
(인근 : 두양리 1073-220)
5. 점·사용의 기간 : 2023.10.26. ~ 2028.10.25.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엘지유플러스

하동군 공고 제2023-1329호

##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 이유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  
: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준용한 법률 용어 정비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하동군(주민행복과, 전화880-7193, FAX 880-7199, e-mail hy10697@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과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기금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운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원 부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액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금		년	분기분				
납입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〇〇〇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료급여금특별회계 기금담당관 (인)							

납입통지서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액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금		년	분기분				
납입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〇〇〇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료급여금특별회계 기금담당관 (인)							

영수필통지서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액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금		년	분기분				
납입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금고 (인)  하동군의료급여금특별회계 기금담당관 (인)							

영수증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액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금		년	분기분				
납입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하동군금고 (인)  (납부자)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3-1349호

##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 하 동 군 수

1. 행정규칙명 :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2. 제안 이유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험성 추정 과정 삭제 및 하동군 소속 사업장 범위 변경, 평가대상·실시시기·실시방법 일부조항 개정·신설
4. 의견 제출 : 이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하동군 경제도시국 안전교통과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 메일 등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안전교통과

- 전화 : 055)880-7134, FAX : 055)880-2259

- 이메일 : [en123@korea.kr](mailto:en123@korea.kr)

붙임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별지】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행정규칙명 :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지침)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훈령 제 호

##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동군”을 “하동군 소속”으로, “추정·결정한”을 “결정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읍·면 및 의회사무과”를 “읍·면”으로 한다.

제5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

6.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시평가 : 사업장의 상시적인 유해·위험요인을 감소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실행

나. 매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여 이행상황을 점검

다. 매 작업일마다 제1호,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주지

제7조제3호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을 파악해 감소대책에 대한”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

7.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제8조(평가절차)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1, 2, 3,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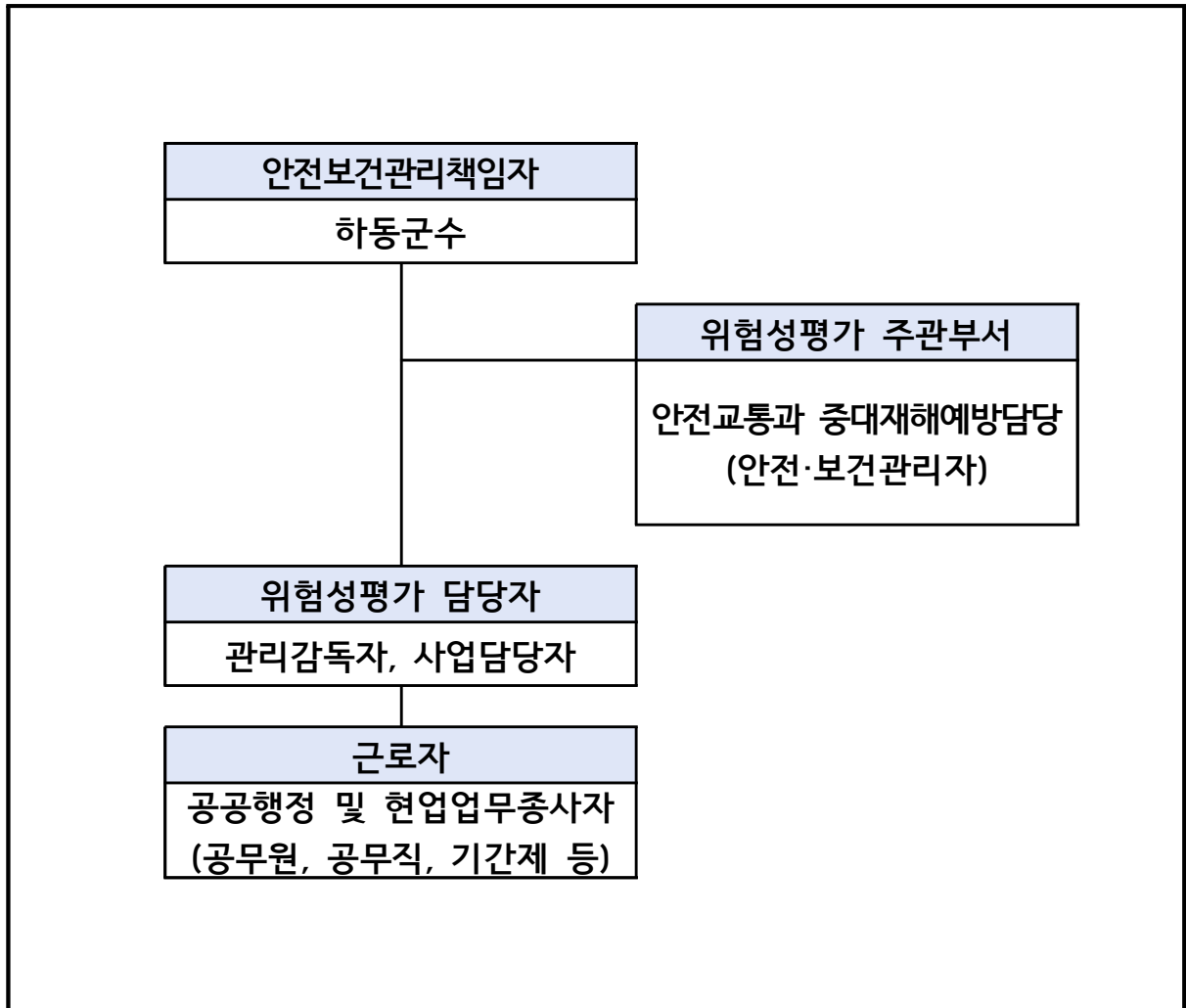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위험성평가 조직 (제3조 관련)



[별표 2]

### 조직의 역할과 책임 (제4조 관련)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p>&lt;위험성평가 총괄 관리&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및 의지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안전보건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li> <li>나.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li> <li>다.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li> <li>라. 아차사고 사례 등 유해·위험요인 발굴 지원</li> </ul> </li> <li>2. 안전보건 관련 교육 이수</li> <li>3. 예산 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li> <li>4.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li> </ol>
위험성평가 주관부서	<p>&lt;위험성평가 실행 관리 및 지원&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li> <li>2.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li> <li>3.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 관련 자료 등을 기록</li> <li>4.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및 기록, 보관</li> </ol>
위험성평가 담당자	<p>&lt;위험성평가 실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li> <li>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li> <li>3.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숙지</li> <li>4.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li> </ol>
근로자	<p>&lt;위험성평가 참여&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의 활동에 참여</li> <li>2.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 결과 감소대책 확인</li> <li>3.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li> <li>4.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장소 인지</li> <li>5. 아차사고 사례의 적극적 제보</li> </ol>

[별표 3]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제7조 관련)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 평가방법 각 호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에 준함

[별표 4]

### 위험성평가 절차(제8조 관련)



## 1단계 사전준비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계획 수립 단계로,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실시 규정을 작성
- 실시규정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실시 조직의 구성과 역할, 절차, 공유방법 등이 포함

### ○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 담당자 또는 관계자가 그 방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어려움
- 외부 교육기관의 교육을 수강하거나 기관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실시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

### ○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 유해·위험요인이 파악 단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하며, 관련 정보를 입수할 때에는 법령·지침·해설서, 사업장 재해현황, 안전보건활동 기록 등의 정보를 토대로 파악
- 핵심적인 유해·위험요인과 관련되는 안전보건정보를 파악한 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단계에서도 필요 시 안전보건정보 활용

■ **활용 가능한 안전보건정보**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 및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반드시 실시)**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 위에 나열된 방법 중 가능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반드시 포함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대상 작업 근로자 등)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업장 점검 시 사전준비**

1.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아차사고 포함)와 질병의 기록
2. 기계·설비 및 변동사항 체크
3. 유해·위험작업, 설비의 특이사항 및 이전 점검사항 기록

○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알아내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가급적 임시·수시로 일하는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조사

○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뻔 했던 상황에서 수행하고 있던 작업의 작업 절차서, 공정흐름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활용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수준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거나,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가 발생한 작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아래와 같이 목록화하여 작업별로 유해·위험한 것이 있다면 체크리스트로 작성
- 수행하고 있는 작업들을 나열하고,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정할 것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분류

구분	위험요인	세부요인
분류 (예시)	1.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 2. 폭발성물질, 발화성물질, 인화성물질, 부식성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인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요인 4. 작업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5. 작업장소에 관계된 위험요인 6.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7. 그 외의 위험요인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요인 2.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유해요인 3.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요인 4. 그 외의 유해요인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분류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1	기계(설비)적 요인	끼임, 위험한 표면, 기계(설비)의 낙하 등, 충돌, 넘어짐 등
2	전기적 요인	감전, 아크, 정전기, 화재/폭발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가스, 증기, 에어로졸·흙, 액체·미스트, 고체(분진), 반응성물질, 방사선, 화재/폭발위험, 복사열/폭발과압
4	생물학적 요인	병원생 미생물·바이러스 감염, 유전자 변형물질, 알러지 및 미생물, 동물,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소음, 초음파, 진동, 저압/고압, 질식위험, 반복작업, 중량물 등
6	작업환경 요인	기후/고온/한랭, 조명, 공간 및 이동통로, 작업시간, 조직문화, 화상, 작업도구

• 재해유형별 분류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1	떨어짐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가설물·수목·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2	넘어짐	사람이 평면 또는 경사면·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는 경우
3	깔림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진 경우 및 지게 차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작업 중 뒤집혀진 경우
4	부딪힘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동작으로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등에 의하여 접촉·충돌한 경우
5	맞음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중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설비 등에서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
6	무너짐	토사·적재물·구조물·건축물·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7	끼임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의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회전체·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
8	절단·베임·찔림	사람과 물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서 칼 등 날카로운 물체의 취급 또는 톱, 절단기 등의 회전날 부위에 접촉되어 신체가 절단되거나 베어진 경우
9	감전	전기가 흐르는 설비의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누설전류(누전)에 의해 인체에 전류가 흘러 사람에게 전기적인 충격이 가해진 경우(전기아크 화상 포함)
10	폭발·파열	폭발은 건축물, 용기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발,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며, 파열은 배관, 용기 등이 압력에 의하여 찢어지거나 터진 경우로 폭발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11	화재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불이 일어난 경우
12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재해자가 물체의 취급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동작 등 신체 동작(반응)에 의한 경우나,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도한 힘·동작을 사용하는 경우



13	이상온도·물체접촉	고·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접촉된 경우
14	화학물질 누출·접촉	화학물질 누출사고(엎지르거나 튀는 경우)에 의한 급성중독, 화상
15	산소결핍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16	빠짐·익사	바다, 호수, 맨홀, 정화조 등의 수중에 빠지거나 익사한 경우
17	기관 내 교통사고	기관 내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8	기관 외 교통사고	기관 외의 도로에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
19	체육행사 등의 사고	업무와 관련한 체육행사, 워크샵, 회식 등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
20	폭력행위	의도 또는 불분명한 위험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1	동물상해	동물에 의해 종사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22	기타	재해정보는 명시되어 있으나, 상기 코드로 분류가 곤란한 경우

● 작업상태 및 활동별 분류

연번	위험요인	세부요인
1	작업장비의 사용	부품, 기계, 차량, 화재 및 폭발 등
2	작업 실습 및 구내 설계	위험한 표면, 고소작업, 서투른 자세, 전도, 보호구, 밀폐공간 등
3	전기의 사용	전기 개폐기, 전기 설치, 전기 제어 등
4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험물질 또는 위험한 시제품에 대한 노출	건강에 위험한 물질 흡입 가연성/폭발성 물질 사용, 부식성 물질 존재 등
5	물리적 요인에 대한 노출	방사선, 레이저, 소음, 초음파, 진동 등
6	생물학적으로인에 대한 노출	미생물 감염, 알러지 유무 등
7	환경요인 및 작업 기후	부적절한 조명, 온도/습도/환기 등
8	작업장소 및 인적요인에 대한 상호작용	안전한 작업 절차, 개인보호구 등
9	심리적 요인	일의 가혹성, 모호한 역할 등
10	작업조직	교대/야간근무, 재해 응급조치 등
11	기타요인	동물/식물 작업, 기후/기압 등

# 3단계 위험성 결정

## ■ 주요내용

-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이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마련해 둔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을 활용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경미한 재해가 드물게 일어나는 수준으로 정할 수 있음
- 사전준비 시 마련한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다음과 같이 위험성을 결정하는데 아래의 위험성평가 방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1. 빈도와 강도법
  2. 체크리스트법
  3. 위험성 수준의 3단계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법

## ○ 빈도·강도법

-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크기(수준)을 산출하고, 이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

**TIP** 빈도·강도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② 위험성 결정

"5×4" 또는 "3×3" 등의 평가척도를 이용해 위험성의 크기를 구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안전조치 실시



○ 체크리스트법

-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 목록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각 항목에 대해 “O”, “X”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 판단

**TIP : 체크리스트 방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각 항목별로 허용 가능한 수준 여부 판단	안전조치 실시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로 구분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TIP :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상'·'중'·'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안전조치 실시
		

○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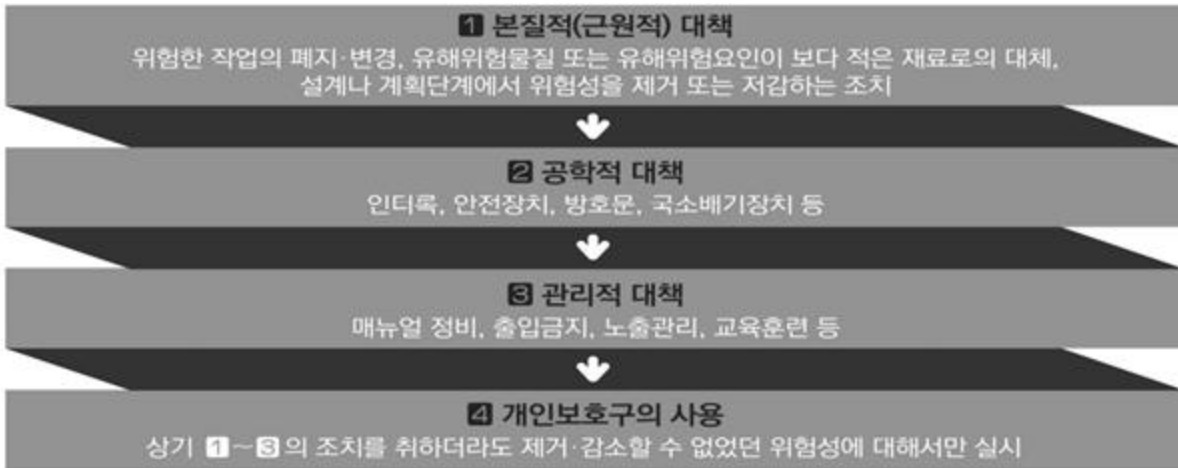
- 단계적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실시하는 방법

**TIP**    핵심요인 기술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 파악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평가·결정	안전조치 실시
		

##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실행 고려사항



#### ○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또는 대체 등 본질적 대책

-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볼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 위험을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감소대책 수립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위험요인의 제거 또는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다음의 감소대책 마련을 고려해야 함

#### ■ 제거·대체 예시

- 인화성 물질을 대체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을 제거
- 급성독성 물질을 일반 물질로 대체하여 건강장해 위험을 낮춤
-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를 공압식으로 교체하여 감전 위험을 제거
- 소음이 심한 기계를 차폐형으로 교체하여 소음 저감
- 높은 건물의 외벽 청소작업을 내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 등

○ 위험을 격리 또는 방호하는 공학적 대책

- 위험요인의 제거 또는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 장비, 기술 및 공학적 조치 고려
-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장비, 도구, 설비의 개선은 작업에 종사하는 개별 근로자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할 위험이 있는 전체 근로자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

■ 공학적 대책 예시

- 끼임 위험이 있는 회전부에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위해 중량물 이동 설비 도입
- X선 장비 등 위험 공정을 완전히 격리하여 배치
- 작업에 적절한 조명 설비 설치

○ 절차서 마련, 작업절차 교육 등 관리적 대책

-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절차서를 마련하고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이미 시행 중인 조치와 추가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한지 고려
- 관리적 대책은 비교적 간단하고 실행하기 쉬우며, 효율적임

■ 관리적 대책 예시

- 설비를 안전하게 작동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절차와 지침 마련
- 안전 및 보건 정보 제공(사용설명서, 경고표지,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등)
- 작업장, 설비 재치의 조정 또는 재설계(지게차 이동 경로 조정 등)
- 위험성평가 교육을 포함하여 작업과 관련한 안전 및 보건 교육 제공

**○ 유해·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개인보호구는 사용자가 고려해야 할 최종 위험관리 대책 중 하나이며, 이미 시행한 다른 위험관리 대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 개인보호구 사용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다른 개선대책의 대안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개인보호구 사용 대책 예시**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고압 활선 작업 시 절연보호구 착용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착용
- 연마 작업 중 방진마스크 착용

## 5단계 위험성평가 공유 및 기록

### ○ 위험성평가의 공유

- 게시 및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
-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매 작업 전마다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유





## ○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실시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기록은 그 자체로 유용한 도구이며 다음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이므로 그 기록을 보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자료와 사업장의 안전 노하우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계·설비 도입 시 참고하는 등 안전기술 축적에 기여
-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을 권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u>하동군</u>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u>추정·결정한</u>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하동군</u> <u>소속</u> ----- ----- <u>결정한</u> ----- ----- ----- ----- -----</p>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모든 사업장(본청, 직속기관, <u>읍·면 및 의회사무과</u> 소속 사업장을 말한다)에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 ----- ----- <u>읍·면</u> ----- ----- -----</p>
<p>제5조(평가대상) 근로자(수급, 수탁인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각 호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5조(평가대상)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u></p> <p>6. <u>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u></p>
<p>제6조(실시시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u>&lt;신 설&gt;</u></p>	<p>제6조(실시시기)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상시평가 : 사업장의 상시적</u></p>

인 유해·위험요인을 감소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 안전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실행

나. 매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여 이행상황을 점검

다. 매 작업일마다 제1호,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주지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제7조(실시방법) -----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을 파악해 감소대책에 대한 수립·실행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

5. 6. (생략)

<신설>

제8조(평가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3. -----  
----- 유  
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

4.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

5. 6. (현행과 같음)

7.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제8조(평가절차) -----  
-- 별표 4와 -----.

하동군 공고 제 2023-1352호

## 하동군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8일

하 동 군 수

1. 행정예고 할 내용 : 하동군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

2. 행정예고 목적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설치 예정인 『하동군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설치 위치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설치 예정 장소

연번	위 치	설치대수	비 고
		4	
1	하동읍 두곡리 733-2번지(율동 소하천)	1	
2	하동읍 읍내리 100-32번지(목골 소하천)	1	
3	고전면 신월리 1143-5번지(사막 소하천)	1	
4	고전면 신월리 991-2번지(신월 소하천)	1	

※ [붙임] 설치 위치도 참조

#### 4.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 5. 사업시행자 : 하 동 군 수

####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10. 19.(목) ~ 2023. 11. 2.(일) 【15일】

#### 7. 공고방법 : 하동군 홈페이지(<https://www.hadong.go.kr>)

#### 8.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10. 19.(목) ~ 2023. 11. 2.(목) 【15일】

나. 의견제출 내용

-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 우편 : (우)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건설과 하천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하동군청 건설과 ☎ 055-880-2535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의 견 제 출 서

공 고 명	하동군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	--

하동군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3-1331호

##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 하 동 군 수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해복구 사업

나. 명 칭 :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하동군수

나.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하동군 악양면 미점 ~ 신성리 일원

나. 면 적 : 372,068㎡

다. 규 모 : 제방보강(우안) L=2.226km, 축제 및 보축(좌안) L=2.259km,  
부대공 1식 등

####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 착수일 : 2022년 4월

나. 준공 예정일 : 2023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자료 참고

- 편입면적은 사업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결과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하시 바랍니다.

6.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장 소 : 경남 하동군 안전총괄과
- 기 간 : 2023. 10. 12. ~ 2023. 10. 27.(15일간)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055-880-25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토지 및 지장물 조서(홈페이지 별첨). 1부.

하동군 공고 제2023-1332호

##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 하 동 군 수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재해복구 사업
- 나. 명 칭 :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하동군수
- 나.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화심리 지내
- 나. 면 적 : 372,068㎡
- 다. 규 모
  - 호안 : 식생블럭 설치 L=196m-전석쌓기 L=221.5m
  - 고지배수로 1식, 게이트 펌스 1식, 부대공 1식 등

####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사업 착수일 : 2022년 3월
- 나. 준공 예정일 : 2023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자료 참고**

- 편입면적은 사업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결과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하시 바랍니다.

**6.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장 소 : 경남 하동군 건설교통과
- 기 간 : 2023. 10. 12. ~ 2023. 10. 27.(15일간)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과 하천(055-880-25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토지 및 지장물 조서(홈페이지 별첨). 1부.